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2634
----------	------

발의년월일 : 2015. 04. 21.

발의자 : 김동규의원 외 12인

1. 주 문

- 가. 안산시 지역경제 침체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 수는 7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5. 5. 1. ~ 2015. 10. 31. (6개월)까지로 한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국내 경제는 소비, 설비투자 부진 등 내수가 감소하고, 생산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수출마저도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우리 시는 지난 4·16 세월호 참사 이후 타 지역에 비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사례로 안산시 소상공인 80% 가량이 3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한 도시’ 이미지로 도시를 찾는 외부관광객이 현저히 줄어 들고 있음.
- 또한, 안산시스마트허브의 경우 2015년 1월 가동율은 71%로 전년 동월대비 8.4%p 감소하였으며, 전국 평균 가동률 79.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러 기업환경의 악재들로 인한 산업 생산활동이 감소하고, 이는 고용 감소에서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심각한 실정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인 피해지역 특별지원방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세밀한 노력이 필요함.
- 둘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침체된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안산시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체계적인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안산시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이를 통하여 상인들이나 시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함.
- 셋째, 대기업이나 중소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안산시스마트 허브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공단 근로자에 대한 복지대책을 강구해야 함.
- 넷째, 일자리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고 일자리 만들기에 안산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

- 결론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안산시의회 차원에서는 안산 지역경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며,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경제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안산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및 대책을 발굴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제조업 활성화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 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 ⑤ <생략>
- ⑥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